

# □ 環境庁告示(第83-4号) □

環境保全法 第27条의 2의 규정에 의한「燃料用 油類의 硫黃 함유 기준 設定 및 使用地域에 관한 告示」를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83. 3. 26

環 境 庁 長

## 燃料用 油類의 硫黃含有 기준 설정 및 使用地域에 관한 告示

第1条(目的) 이 告示는 환경보전법 제27조2의 규정에 의한 燃料用 油類의 硫黃 함유 기준과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条(用語의 定義) 이 告示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燃料用 油類」라 함은 原油를 정제한 石油製品중 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輕質重油, 重油, 벙커-C油 및 輕油를 말한다.
2. 「硫黃含有量」이라 함은 燃料用 油類속에 함유된 硫黃分の 重量백분율을 말한다.
3. 「事業者」라 함은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低硫黃 燃料油」라 함은 제3조 燃料用 油類의 硫黃 함유 기준에 적합한 燃料用 油類를 말한다.
5. 「自動車의 使用者」라 함은 自動車의 소유자 또는 自動車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石油精製業者」라 함은 石油事業法 第4条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第3条(燃料用 油類의 硫黃 함유 기준) 燃料用 油類의 硫黃 함유 기준은 別表1과 같다.

第4条(適用範圍) ① 燃料用 油類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자동차의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 및 自動車의 사용자는 低硫黃 燃料油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관할구역안의 事業者
    - 가. 서울특별시
    - 나. 仁川직할시
    - 다. 京畿道の 城南市, 議政府市, 安養市, 富川市, 光明市, 始興郡.
    - 라. 慶尙南道の 蔚山市, 蔚州郡.
  2. 다음 관할구역안에 등록된 自動車의 使用者, 또는 동구역울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自動車의 使用者.
 

가. 서울특별시	마. 京畿道
나. 釜山직할시	바. 慶尙北道
다. 大邱직할시	사. 慶尙南道
라. 仁川직할시	
- ② 低硫黃燃料油 사용대상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事業場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당해시설에 저유황연료를 사용한 경우의 배출농도 이하로 되는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環境庁長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低硫黃燃料油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료의 代替
  2. 배연탈황시설의 설치
  3. 아황산가스가 흡수·흡착등의 방법으로 工程중에서 제거되는 경우
  4. 기타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第 5 条 (低硫黄燃料油 사용계획 제출)** 사업자는 低硫黄燃料油 사용개시 10일전에 別紙 제1호 서식에 의한 低硫黄燃料油 사용계획을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 6 条 (低硫黄燃料油의 판매)** 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4 조 제 1 항의 관할구역안에서 영업을 하는 연료용 油類 판매업자에게 低硫黄燃料油가 아닌 연료용 유류의 판매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 7 条 (実績報告)** 사업자, 石油精製業者 및 石油輸入業者는 저유황연료유의 생산, 판매 및 사용실적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別紙 제 3 호 서식 및 別紙 제 3 - 2 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내에 시·도지사를 경유, 환경청장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8 条 (硫黄分 분석방법)** 연료용 유류중의 硫黄含有量 분석방법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다.

**第 9 条 (시험분석기관)** 연료용 油類중의 유황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항의 1 과 같다.

1. 국립환경연구소
2. 서울특별시 종합기술 시험연구소
3. 시·도 보건연구소
4. 기타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第 10 条 (확인검사)** 환경청장은 低硫黄燃料油의 사용여부, 사용실적, 생산, 판매 및 유황함유량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自動車의 사용자, 석유판매업자 및 石油精製業者의 사업장 및 自動車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附 則**

- ① 이 告示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第 4 条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事業者

중 다음의 發電業을 하는 사업자는 別表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황함유량 2.5% 이하의 燃料를 각각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여사용량은 유황함유량 4.0% 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所 在 地	發 電 所 名	사용량(BPCD)
仁 川 直 轄 市	仁 川 火 力 京 仁 火 力	20,000
慶 尚 南 道	蔚 山 火 力 嶺 南 火 力	30,000

③ 이 告示의 시행과 동시에 환경청고시 제81-8 호('81.6.1) 및 제82-1('82.1.4)는 이를 폐지한다.

(別表 1)

燃料用 油類의 유황함유 基準

(단위 : Wt%)

유종별	유황함유기준	基 準
輕 質 重 油 (B-A)		1.6이하
重 油 (B-B)		1.6이하
병 커 - C 油 (B-C)		1.6이하
輕 油		0.4이하

(제 1 호 서식)

(일 소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198 . . . .		
수 설:	발전:		
제 목 : 저유황 연료유사용(변경)계획서			
사업자	①업 종	②소 재 지	
	③대 표 자	④배출시설 관리인	⑤배출시설 위 가 일 19 . . . .
원 장	⑥유 종	⑦유황함유량 (%)	⑧사 용 량 (kg) 년 : 월 (희대) :
	⑨사 용 용 도 (해당사항O표)	선업, 발전, 난방, 기타( )	⑩대기오염 방지시설
	⑪저 장 용 량 (kg)	(발크수: )	⑫구입방법 (해 당 사 랑 O 표) 경유공장, 대리점, 우유소 기타( )
사 용 (변경)	⑬유 종	⑭유황함유량 (%)	⑮사 용 량 (kg) 년 : 월 (희대) :
	⑯사 용 (변경) 개 시 일 19 . . . .	⑰변경사유	
첨부 : 연료의 계산, 대세 또는 매연당량시설 설치에 의하여 연료를 변경할 때에는 그 계획서 1부.			

5303-16D  
1981.6.15출판

295mm×380mm  
신문용지54kg/㎡

(업 소 명)

분 류 호 : (전화번호) 198 . . . . .

수 신 : 발신 :

제 목 : /4분기 저유황 연료유 사용실적보고 (단위 : kl)

사 업 자	① 업 종				② 소 재 지							
	③ 대 표 자				④ 배 출 시 설 관 리 인			⑤ 종 업 원	계 ( ) 남 ( ) 여 ( )			
	⑥ 주 요 생 산 제 품				⑦ 용 도 (해 당 사 항 ○ 포)	산업, 난방, 발 전 기타 ( )	⑧ 유 류 저 장 용 량					
구 입 및 사 용 실 적	유 종	⑨ B - C 유			⑩ B-B유	⑪ B-A유	⑫ 경 유		⑬ 등 유	⑭ 기 타 (나프타등)		
	구 분	유황분	1.6%	2.5%	4.0%			0.4%	1.0%			
	⑮ 전 분 기 재 고											
	⑯ ( )월											
		계										
	⑰ ( )월											
계												
⑱ 분 기 말 재 고												
기 타	⑲ 고 체 연 료 사 용 량		연료명 : ( ) 사용량 : ( )톤/분기									
	⑳ 참고사항 : (1. 저유황 연료유 불사용 사유) (2. 연료대체, 개선계획)											

(제 3 - 2 호 서식)

(업 소 명)

분류기호 : (전화번호) 198 . . .

수 신 : 환경청장

발신 :

제 목 : /4분기 저유황 연료유 생산(수입) 공급 실적보고

단위 { 물 량 : kl  
유황분 : Wt%

사 업 자	① 대표자			② 업 종		석유정제업, 수입업(해당사항○표)					
	③ 소재지			④ 전 화		사무실( )공장( )					
원 유 도 입 실 적	산지별		⑤ ( ) 산		( ) 산		( ) 산		( ) 산		
	도입량계		도입량	유황분	도입량	유황분	도입량	유황분	도입량	유황분	
구 분	유 종 ⑥ B - C 유			⑦	⑧	⑨ 경 유		⑩	⑪	⑫	
	S:1.6%	S:2.5%	S:4%			B-B유	B-A유				S:0.4%
생 산 (수 입) 공 급 실 적	⑬ 전월 재 고	생 산									
		수 입									
	⑭ 생 산	( )월									
		( )월									
		계									
	⑮ 수 입	( )월									
		( )월									
		계									
	⑯ 출 고	( )월									
		( )월									
		계									
	⑰ 자 가 소 비	( )월									
		( )월									
		계									
	⑱ 년 누 계	생 산									
		수 입									